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2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이정헌·조인철·전현희

채현일 • 박민규 • 복기왕

박홍배 · 김영환 · 권향엽

양부남 • 김기표 • 문금주

백승아 · 김 유 · 김 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 통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불법정보등에 대한 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등"이라 한다)의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불법정보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등에 대한 신고 절차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 생 제44조의3(임의의 <u><신 설></u>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 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u>①</u> · <u>②</u> (생 략)		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
<신 설>		과 같음) 제44조의11(불법정보등에 대한 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 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 보 중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 보 및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 정보(이하 "불법정보등"이라 한 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 전 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

이용자가 불법정보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등에 대
한 신고 절차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0조제1</u>
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 략) <<u>신 설></u>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
 하여 불법정보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지 아니한
 <u>자</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